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사업 유형: 7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3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 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업 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 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 ③ **시민사회**(예시: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
- ④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예시: 환경보전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 평화 증진 활동,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등)
- ⑥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 COVID-19 확산 예방 활동 등)
-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국제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국제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3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2개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22.12.29.(목) 09:00 ~ 2023.1.26.(목)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 ① [회원가입]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 ② [사업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3.1.26.)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9)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070-7771-9562~4)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 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분야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20
사업내용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70
예산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10
가점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 '23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 참여단체, '23년 사업신청시 자율적 자부담 반영 사업	+α

※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포기한 단체 또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1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2022년 사업 종합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회계분야 50점이하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추가)**

- 발표 : '23. 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시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 타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 개요 및 사업신청서 제출방법 등 안내

- (일시/장소) '22.12.23.(금) 14:00~15:30 / 비앤디파트너스 영등포구청점 본아카데미홀
-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65, 와이피센터 1층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5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이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150백만원 이내) 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의무 자부담은 없으며, 단체에서 자율적 자부담시 총점의 2점 범위(5% 1점, 10% 1.5점, 15%이상 2점)에서 가점 부여(자율적 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 2022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2023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가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